



No. 2022-217
품목 목이버섯(Wood ears Mashroom)
HS CODE 0712.32.0000
국가 일본(Japan)



C.O.N.T.E.N.T.S

| | | |
|------------|--|-----------|
| I | 시장 현황 및 전망 | 3 |
| | 1. 시장 규모 2. 수출입 통계 | |
| II | 트렌드 | 10 |
| | 1. 소비 트렌드 2. 빅데이터 분석 | |
| III | 유통 | 18 |
| | 1. 유통구조 및 현황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 |
| IV | 통관 및 검역 | 27 |
| |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요건 | |
| V | 시사점 | 52 |
| | 1. 수출 확대 방안 | |

I

시장 현황 및 전망



01 시장 규모

가공 과일 및 야채 시장 규모

2022년 일본 가공 과일 및 야채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39억 엔(약 1조 952억 1,684만 원)을 기록함. 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함

- 일본은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선 과일 및 야채를 선호함. 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외국 음식을 쉽게 접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경우 가공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가공 과일 및 채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대부분이며, 냉동 가공 과일 및 채소 제품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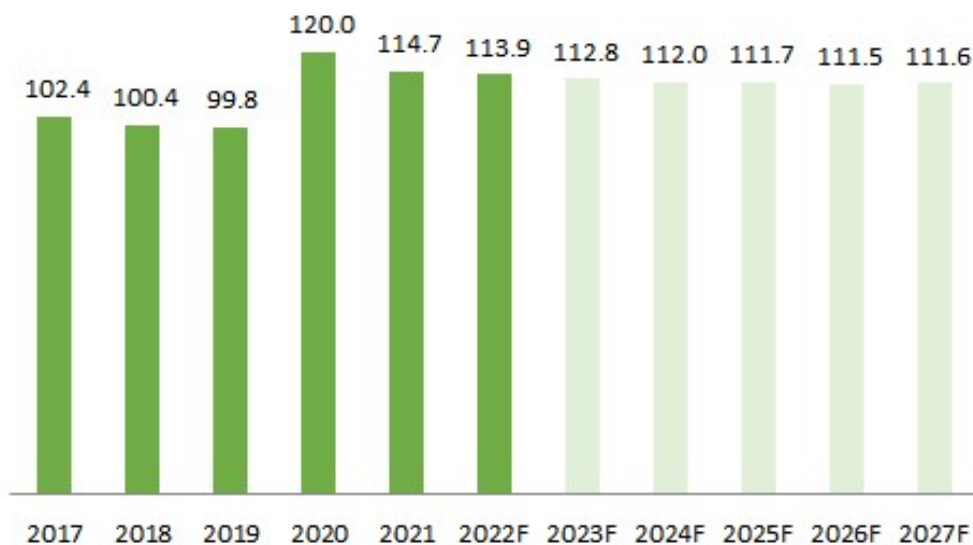
향후 5년간(2023-2027년) 가공 과일 및 채소 판매액은 연평균 성장률 -0.5%를 기록하며 지속 감소하여 2026년 약 1,116억 엔(약 1조 731억 9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 규모 추이(2017-2027년)

(단위: 십억 엔)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상온 야채 시장 규모

지원 기업의 제품은 목이버섯으로, Euromonitor의 분류에 따르면 상온 야채(Shelf Stable Vegetables) 범위에 포함됨

2021년 소매 판매액 기준, 일본 상온 야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343억 엔(약 3,298억 1,508만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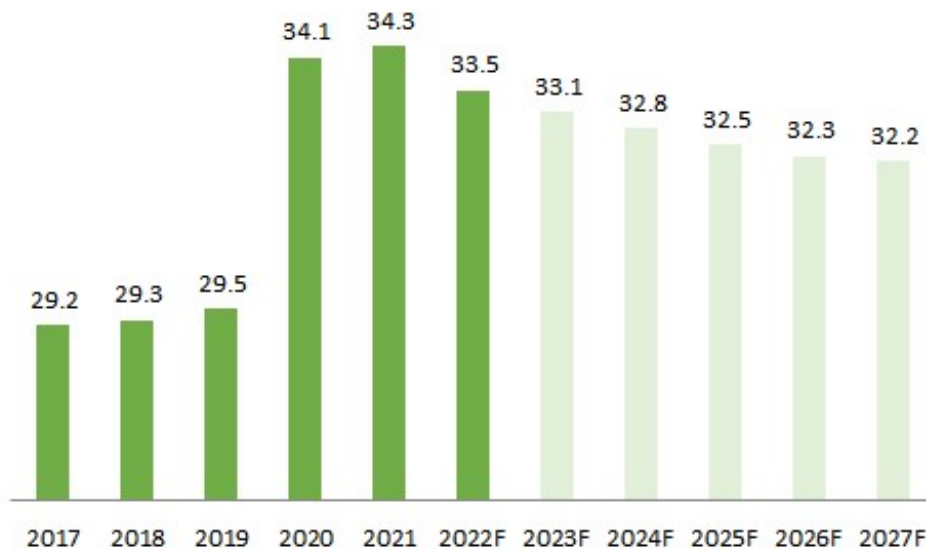
상온 야채 소매 판매액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4.1% 성장함.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보관이 용이한 상온 야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상온 야채 소매 판매액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0.9% 감소하여 2027년 약 322억 엔(약 3,096억 2,23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상온 야채 시장 규모 추이(2017-2027년)

(단위: 십억 엔,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수출입 통계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0712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HS CODE 0712.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0712.32.0000
- 일본: 0712.32.000
- 한국: 0712.32.00000

글로벌 목이버섯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목이 버섯(HS CODE 0712.32) 수입 규모는 1억 502만 7,000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3.9% 감소함

- 태국은 2021년 기준 2,607만 9,000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약 24.8%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1%를 기록함
- 이어서 일본(18.8%), 베트남(13.5%), 한국(6.8%), 말레이시아(6.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

글로벌 목이버섯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 국가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성장률 |
|---------|---------|---------|---------|--------|---------|---------|
| 글로벌 | 122,986 | 249,684 | 206,686 | 93,614 | 105,027 | -3.9 |
| 1 태국 | 28,399 | 84,981 | 85,356 | 19,202 | 26,079 | -2.1 |
| 2 일본 | 21,115 | 23,219 | 21,636 | 20,325 | 19,719 | -1.7 |
| 3 베트남 | 27,991 | 64,695 | 47,177 | 12,680 | 14,141 | -15.7 |
| 4 한국 | 4,389 | 4,840 | 5,212 | 5,226 | 7,142 | 12.9 |
| 5 말레이시아 | 4,457 | 17,073 | 8,376 | 6,105 | 6,339 | 9.2 |
| 기타 | 29,023 | 47,575 | 30,743 | 22,257 | 22,819 | -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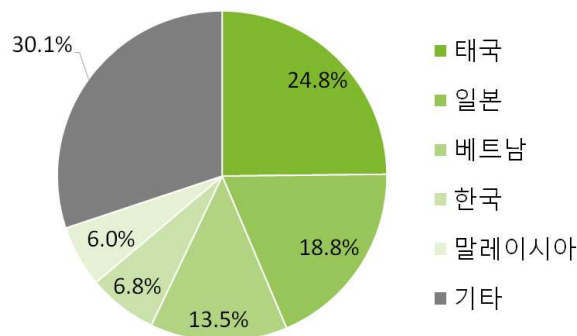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4

글로벌 목이버섯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일본 목이버섯 수입 규모

2021년 일본의 목이 버섯(HS CODE 0712.32.000) 수입 규모는 對중국 수입액이 1,887만 5,000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95.7%를 차지함

- 그 외 홍콩(3.7%), 베트남(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아래 5개 국가로부터의 수입 외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2017년 對한국 수입 규모는 7,000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표 5

일본 목이버섯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 국가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성장률 |
|-------|--------|--------|--------|--------|--------|---------|
| 글로벌 | 21,115 | 23,219 | 21,636 | 20,325 | 19,719 | -1.7 |
| 1 중국 | 21,009 | 23,016 | 21,509 | 19,573 | 18,875 | -2.6 |
| 2 홍콩 | 38 | 62 | 51 | 700 | 721 | 108.7 |
| 3 베트남 | 54 | 131 | 70 | 52 | 123 | 22.9 |
| 4 한국 | 7 | - | - | - | - | -100.0 |
| 5 대만 | 7 | 9 | 6 | - |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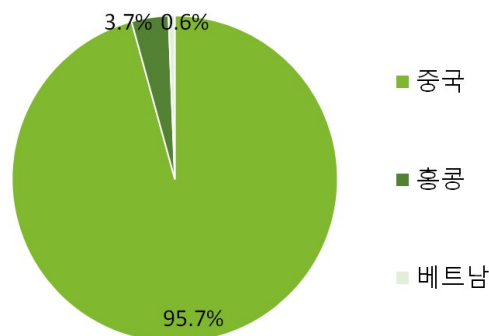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6

일본 목이버섯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한국 목이버섯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목이버섯 수출 규모는 1억 4,637만 8,000달러, 수출량은 7.7톤을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52.3%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함
- 수출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9.5%를 기록함

2021년 한국의 對일본 목이버섯 수출 규모는 1,100달러, 수출량은 80kg을 기록함

- 對일본 수출액은 2017년 6,8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수출액이 없다가 2021년 1,100달러를 기록함



표 7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일본 목이버섯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kg, %)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성장률 |
|----------|--------------|--------|--------|---------|---------|---------|---------|
| 對 글로벌 | 수출액 (YoY) | 27.180 | 20.346 | 41.637 | 68.630 | 146,378 | 52.3 |
| | 수출량 (YoY) | 932.5 | 624.9 | 1,755.8 | 2,788.7 | 7,692.9 | 69.5 |
| 對 일본 | 수출액 (YoY) | 6.8 | - | - | - | 1.1 | -36.6 |
| | 수출량 (YoY) | 50.0 | - | - | - | 80.0 | 12.5 |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II

트렌드



01 소비 트렌드

일본 버섯 생산 및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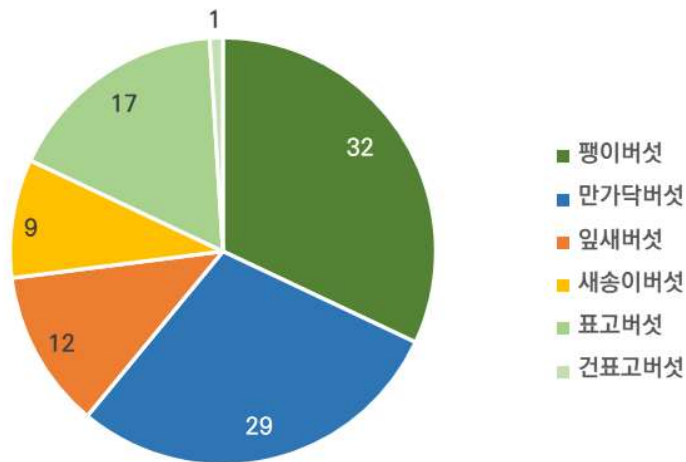
2019년 일본의 버섯류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5만 6,442톤을 기록함

- 품목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팽이버섯이 전체의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어서 만가닥버섯(29%), 표고버섯(17%), 잎새버섯(12%), 새송이버섯(9%), 건표고버섯(1%) 순임
-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잎새버섯, 새송이버섯은 대기업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표고버섯, 송이버섯은 중소기업에 의한 생산이 많음



그림 8 일본 버섯 품목별 생산 비중(2019년)

(단위: %)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임야청(農林水産省 林野庁)

최근 버섯 소비 확대를 위해 임야청 및 기업들은 버섯의 맛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에서 버섯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섯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버섯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30% 증가함

상온 과일 및 채소 시장 주요 기업 점유율

2022년 일본 상온 과일 및 야채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Hadoromo Foods Corp이 전체 시장의 16.6%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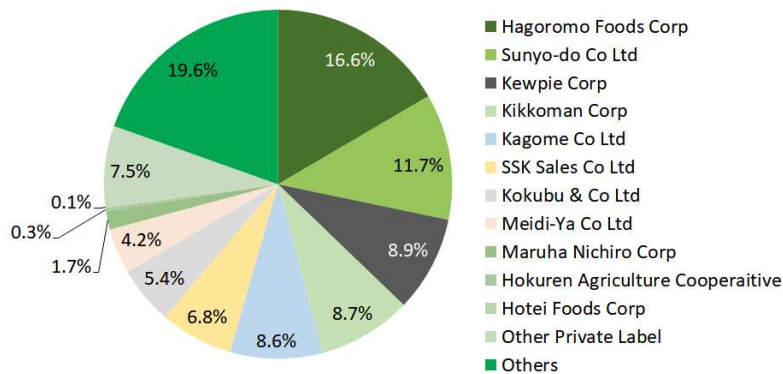
- 이어서 Sunyo-do Co Ltd 11.7%, Kewpie Corp 8.9%, Kikkoman Corp 8.7%, Kagome Co Ltd 8.6%, SSK Sales Co Ltd 6.8%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9

상온 과일 및 야채 기업별 시장 점유율(2022년)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년 일본 상온 과일 및 야채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Hadoromo가 전체 시장의 16.6%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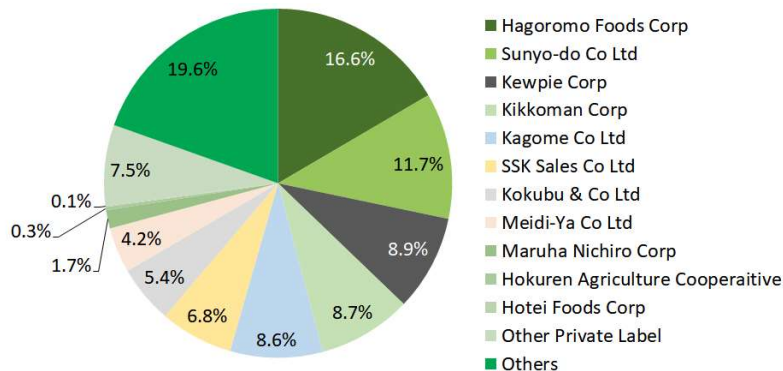
- 이어서 Sunyo-do Co Ltd사의 Sunyo-do 11.7%, Kewpie Corp사의 Salad Club 8.9%, Kikkoman Corp사의 Del Monte 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10

상온 과일 및 야채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2022년)

(단위: %)



자료:Euromonitor International

목이버섯 활용 식품

일본어로 '나무의 귀'라는 뜻을 가진 목이버섯은 식감이 독특해서 일찍이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음. 전통 일본 요리보다는 주로 중화요리나 라멘의 토핑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식에 쓰이기도 하며,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그림 11 일본 목이버섯 활용 식품



라멘 토핑



목이버섯 달걀볶음



목이버섯 마파두부



목이버섯 스프

출처: 오렌지페이지넷(www.orangepage.net)

그림 12 목이버섯 제품 판매 현황



애슬리(ATHREE)



타마찬솅(구난서비스)

HOKUTO ホクトの乾燥きくらげ (50g)



호쿠토(HOKUTO Corporation)



トレー入りなので
プチギフトにも、おすすめです。

100g

이세오카상점(isekyu-mie)(원산지: 중국)

자료: 라쿠텐(rakuten.co.jp)

02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개요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아마존 재팬은 일본 온라인 유통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목이버섯(キクラゲ, wood ear)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수집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문구), 소비자반응(리뷰)이며 총 수집건수는 제품 104건, 소비자반응 1,107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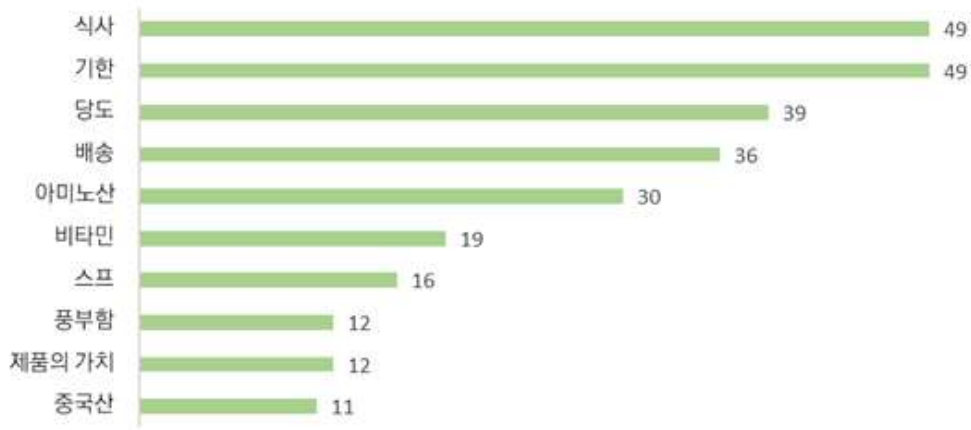
1.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목이버섯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기한 49건, 식사 49건, 당도 39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주요 단어들은 원산지, 배송, 아미노산, 비타민, 스프, 가치, 풍부함, 중국산 등이 출현함. 일본 내 아마존 쇼핑몰에서 드립커피 검색 시 목이버섯의 기한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버섯의 영양소에 관련된 단어들도 추출 되었으며, 원산지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임

표 13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 순위 | 출현단어 | 출현빈도 |
|----|--------|------|
| 1 | 기한 | 49 |
| 2 | 식사 | 49 |
| 3 | 당도 | 39 |
| 4 | 배송 | 36 |
| 5 | 아미노산 | 30 |
| 6 | 비타민 | 19 |
| 7 | 스프 | 16 |
| 8 | 제품의 가치 | 12 |
| 9 | 풍부함 | 12 |
| 10 | 중국산 | 11 |

그림 14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2. 동시출현단어 분석

연관단어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목이버섯 제품 소개 시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간장 베이스이다. 그 뒤로는 기한, 배송도착일, 보관방법, 주문일, 근사한, 충분한 양, 영양소(비타민, 아연, 칼슘 등), 원산지 순으로 도출됨. 소비자들이 배송지연, 배송도착일 등 배송 관련된 단어를 빈번하게 검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주물몰이 높거나 배송기간이 긴 제품으로 추려볼 수 있음. 편하지만 영양소가 높은 건강식으로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5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 순위 | 연관단어 | 빈도 |
|----|---------|----|
| 1 | 간장베이스 | 20 |
| 2 | 기한 | 11 |
| 3 | 배송도착일 | 8 |
| 4 | 보관방법 | 7 |
| 5 | 주문일 | 7 |
| 6 | 근사한 | 4 |
| 7 | 충분한 양 | 3 |
| 8 | 풍부한 비타민 | 3 |
| 9 | 아연과 칼슘 | 3 |
| 10 | 원산지 | 2 |

3. 리뷰 출현 단어 분석

목이버섯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리뷰에선 주먹밥 언급이 가장 높았는데 그 뒤로 표고버섯, 곁들임 요리, 가성비, 도시락, 사용하기 편한, 볶음 요리, 가정에서 쉬움이 도출됨. 가정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반찬 및 도시락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 순위 | 연관단어 | 빈도 |
|----|---------|----|
| 1 | 주먹밥 | 23 |
| 2 | 표고버섯 | 8 |
| 3 | 곁들임 요리 | 7 |
| 4 | 가격 성능비 | 6 |
| 5 | 도시락 통 | 5 |
| 6 | 사용하기 편한 | 5 |
| 7 | 볶음 요리 | 4 |
| 8 | 가정에서 쉬움 | 4 |

III

유통



01 유통구조 및 현황

식음료 오프라인 유통채널 현황

일본 식음료 소매업계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크게 백화점, 슈퍼마켓(GMS, 하이퍼마켓 포함), 편의점, 드러그스토어로 분류됨

- 2021년 기준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판매 매출액 비중은 슈퍼마켓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편의점(31.9%), 드러그스토어(9.7%), 백화점(6.7%) 순판매액 기록함
- 슈퍼마켓, 드러그스토어의 식품 판매액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5%, 8.4%로 - 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백화점, 편의점의 식품 판매액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7%, -0.7%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나타냄.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드러그스토어 확대, 넷슈퍼 확대 등 식품 구매처가 다양해졌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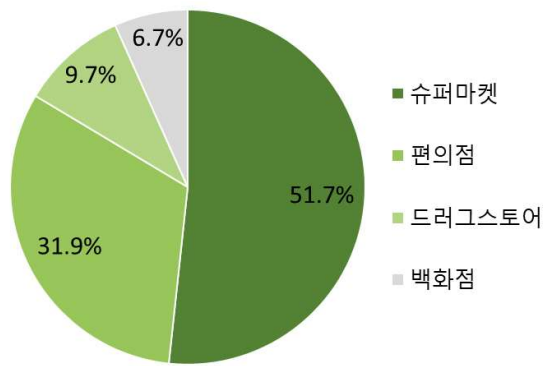
표 17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 식품 판매 시장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억 엔,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성장률 |
|--------|---------|---------|---------|---------|---------|--------|
| 슈퍼마켓 | 96,440 | 98,302 | 98,469 | 116,268 | 119,405 | 5.5 |
| 편의점 | 75,919 | 77,694 | 78,522 | 73,964 | 73,770 | -0.7 |
| 드러그스토어 | 16,206 | 18,061 | 19,420 | 21,834 | 22,338 | 8.4 |
| 백화점 | 18,619 | 18,116 | 17,756 | 14,899 | 15,353 | -4.7 |
| 합계 | 207,184 | 212,173 | 214,167 | 226,965 | 230,866 | - |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18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 식품 판매 시장 점유율(2021년)



자료: 경제산업성

식음료 온라인 유통채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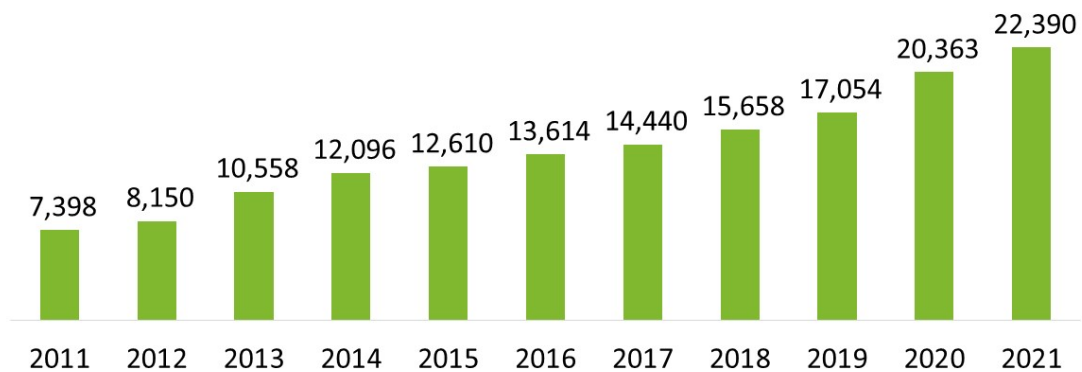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일본 식품 통신판매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10.0% 증가한 2조 2,390억 엔(약 21조 5,293억 2,840만 원)을 기록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슈퍼마켓을 비롯한 통신판매 유통채널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신규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에는 신규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과 동시에 기존 이용자들의 재구매가 늘어나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통신판매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라쿠텐 시장과 세이유 등 통신판매 기업과 슈퍼마켓의 협업에 의한 온라인 슈퍼마켓 사업 강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식품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9 식품 통신판매 시장 규모 추이(2011-2021년)

(단위: 억 엔)



자료: 후지경제

주요 유통채널별 현황

일본 백화점 유통채널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기준 백화점 매출액은 4조 6,000억 엔(약 44조 2,317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5.8% 감소한 수치임
- 2010년 이후 일본 백화점 유통채널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급감함

그림 20 백화점 유통채널 매출액 추이(2010-2020년)

(단위: 조 엔)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 자료에 의하면 백화점 유통채널 점포 수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백화점의 식품 매출액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은 부유층, 외국인 여행객의 수요로 매출을 만회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대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도심부, 수도권 지역에서도 매출 적자를 기록함

- 2020년 매출액 기준, 일본의 주요 백화점 순위는 다음과 같음

표 21 주요 백화점 매출액 순위(2020년)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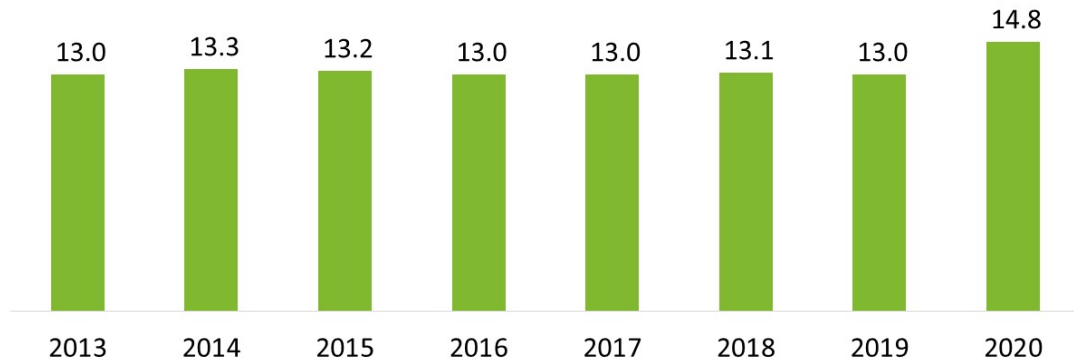
| 순위 | 기업명 | 매출액 |
|----|------------|-------|
| 1 | 미쯔비시 백화점 | 8,160 |
| 2 | 다카지마 | 6,808 |
| 3 | 세븐앤아이 | 4,191 |
| 4 | 에이치투오 리테일링 | 3,477 |
| 5 | 제이프론트 리테일링 | 3,190 |

자료: Gyokai-search

2020년 기준 슈퍼마켓 매출액은 14조 8,000억 엔(약 142조 3,108억 8,000만 원)을 기록함. 코로나19로 인해 식품, 생필품 등을 비축해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1조 8,000억 엔(약 17조 3,080억 8,000만 원) 증가함.

그림 22 슈퍼마켓 유통채널 매출액 추이(2013-2020년)

(단위: 조 엔)



자료: 경제산업성

슈퍼마켓은 식품뿐만 아니라 전 제품군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통채널임 - GMS(General Merchandise Store)와 같은 종합슈퍼마켓 채널에서는 일반 슈퍼마켓 혹은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외에도 의류, 신발, 운동용 제품, 침구류, 주방 도구 등도 판매함

USDA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슈퍼마켓 채널은 AEON Retail, Ito Yokado, Life Corp. 등이 있음. 또한 고급 슈퍼마켓, 수입 식료품점으로는 Kinokuniya Co, Ltd., Meidi-ya, Seijo Ishii 등이 있음

표 23 주요 슈퍼마켓 유통채널

| 순위 | 소매점명 | 홈페이지 주소 |
|----|-------------|--|
| 1 | AEON Retail | www.aeon.info/ |
| 2 | Ito Yokado | www.itoyokado.co.jp/special/global/en/ |
| 3 | Life Corp. | www.lifecorp.jp/company/ |


자료: USDA

AEON mall 혹은 Ito Yokado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슈퍼마켓은 주로 ① 수입업자로부터의 직접 납품, ② 제조업자와 가공업자로부터의 직접 납품, ③ 도매상 및 유통업자로부터의 납품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받음

- 지역 슈퍼마켓도 대형 슈퍼마켓과 비슷한 유통경로를 거치지만, 주로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대다수임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말 기간 매출액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상위 10개 슈퍼마켓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기준 1위는 이온으로 매출액은 6조 1,146억 엔, 점유율은 31.5%를 기록함
- 이어서 2위는 세븐앤아이, 3위는 Life Corp.으로 조사됨
- 4위, 5위는 각각 VALOR, 유나이티드 슈퍼가 차지함

 표 24 주요 슈퍼마켓 유통채널 순위(2020-2021년)

(단위: 억 엔, %)

| 순위 | 기업명 | 매출액 | 점유율 | 홈페이지 |
|----|-----------------------------------|--------|------|-------------------------|
| 1 | 이온(주) (イオン) | 61,146 | 31.5 | www.aeon.info |
| 2 | 세븐&아이 홀딩스 (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 | 18,026 | 9.3 | www.7andi.com |
| 3 | Life Corporation (ライフコーポレーション) | 7,591 | 3.9 | www.lifecorp.jp |
| 4 | VALOR CO., LTD. (バローホールディングス) | 7,301 | 3.8 | www.valorholdings.co.jp |
| 5 | United Super Markets (ユナイテッド・...) | 7,189 | 3.7 | www.usmh.co.jp |
| 6 | Izumi Co., Ltd. (イズミ) | 6,797 | 3.5 | www.izumi.co.jp |
| 7 | ARCS COMPANY, LIMITED (株式会社アークス) | 5,569 | 2.9 | www.arcs-g.co.jp |
| 8 | 맥스밸류서일본(マックスバリュ西日本) | 5,542 | 2.9 | www.maxvalu.co.jp |
| 9 | YAOKO CO., LTD. (ヤオコー) | 4,871 | 2.5 | www.yaoko-net.com |
| 10 | YORK-BENIMARU CO.,LTD. (ヨークベニマル) | 4,690 | 2.4 | www.yorkbenimaru.com |

자료: Gyokai-search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오프라인 유통채널인 슈퍼마켓(AEON, Ito Yokado)과 온라인 유통채널인 아마존 재팬을 선정하여 분석함


슈퍼마켓: AEON

|  | |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 1926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 유통 브랜드 - 2021년 매출액 기준 일본 주요 슈퍼마켓 유통채널 1위를 기록함 - 영업 형태에 따라서 GMS, 슈퍼마켓, 드러그스토어, 약국, 의류 및 기타 전문 매장 등으로 구분함 | |
|---|---|--|--|
| 업체명 | AEON Co., LTD | | |
| 연락처 | +81-432126000 | | |
| 홈페이지 | https://www.aeon.info/ | 본사 소재지 1-5-1, Nakase, Mihama-Ku Chiba, Chiba, 261-0023 Japan 매출액 781억 8,000만 엔 (202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 | |
| 영업 형태에 따른 브랜드 구분 | | | |
| - AEON 그룹은 슈퍼마켓 2,300개, GMS 600개, 할인점, 드러그스토어, 의류 및 기타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음 | | | |
| 구분 | 브랜드명 | 브랜드로고 | 홈페이지 |
| GMS | AEON KYUSHU Co., Ltd. |  <small>イオン九州株式会社</small> | www.aeon-kyushu.info/sales_promotion/index |
| | Sunday Co., Ltd. |  | www.sunday.co.jp/ |
| 슈퍼마켓 | Maxvalu Tokai Co., Ltd. |  | www.mv-tokai.co.jp/ |
| | MINISTOP Co., Ltd. |  | www.ministop.co.jp/ |
| | United Super Markets Holdings Inc. | U.S.M.Holdings <small>ユナイテッド・スーパーマーケット・ホールディングス</small> | www.usmh.co.jp/ |
| 할인점 | AEON BIG CO., LTD. |  | www.aeonbig.co.jp/ |
| | BIG-A CO., LTD. |  | www.big-a.co.jp/ |
| 드러그스토어 | WELCIA HOLDINGS CO., LTD. |  | www.welcia.co.jp/ja/index.html |
| | AEON BODY Co., Ltd. | AEONBODY | www.aeonbody.com/ |

슈퍼마켓: ITO-YOKADO

| | | | |
|--|---------------------|------------------------------|--|
|  | |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 약 175개의 슈퍼마켓을 운영 중 - 슈퍼마켓 중 약 절반은 도쿄,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 외에도 의류, 가정용품 등을 판매함 - ITO-YOKADO의 일본 슈퍼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약 12%로, 14%를 점유하는 AEON과 경쟁 중인 2위 슈퍼마켓임 |
| 업체명 | ITO-YOKADO Co., LTD | | |
| 연락처 | +81-362382111 | | |
| 홈페이지 | www.itoyokado.co.jp | 본사 소재지 | 8-8, NibanchoNibancho Garden Chiyoda-Ku, Tokyo, 102-0084 Japan |
| | | 매출액 | 95억 8,000만 엔 (2022년 2월 28일 회계연도 기준) |
| 입점 절차 | | | |
| <p>1) 홈페이지를 통한 입점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필요한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가격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p>2) 문의사항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81-3-6238-3132 | | | |

온라인 유통업체: Amazon

| | | | |
|---|---|------------------------------|---|
|  | |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채널 - 사업 초기 핵심으로 했던 서적 및 소프트웨어 판매 구성비가 여전히 높으나, 식품, 음료, 가전 등 배송 가능한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
| 업체명 | AMAZON Japan | | |
| 연락처 | +81-120899543 | 본사 소재지 | 1-8-1, Shimomeguro Meguro-Ku, Tokyo, 153-0064 Japan |
| 홈페이지 | https://amazon.co.jp/ | 매출액 | 226억 달러(2021년 기준) |
| 입점 방법 | | | |
| <p>1) 입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품용 계정을 등록. 등록 시에는 정부발행 신분증명서, 은행계좌 번호·코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납세 정보, 전화 번호 등이 필요함. 등록 후에 심사가 진행 - 소규모 출품 서비스: 출품 가능한 상품이 한정되어 있어 식품·음료, 화장품, 의류, 보석 등은 출품이 불가능 - 위의 상품을 대규모 출품 서비스로 출품 시: 허가 신청이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며, 식품·음료도 필요할 수 있음 <p>2) 최소 신청 예산: 월 이용료+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 출품 서비스: 4,900엔(VAT 별도) (2) 소규모 출품 서비스(월 주문량 49개 이하): 100엔(VAT 별도) - 판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체결 시 8~15%, 45%, 품목에 따라서 상이하며 최저 판매 수수료 30엔 (2) 소규모 출품 서비스의 경우, 기본 체결 수수료 건당 100엔 | | | |

IV

통관 및 제도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출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 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일본 수입 통관 절차

개요

수입 통관은 외국 물품을 일본 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수입신고, 물품 심사·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함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일본으로 들여올 수 있음

수입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과실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제품 등 축산물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수입 통관 절차도



일본 수입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 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통해 알려야 함

송하인과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 정보, 품명, HS Code, 총중량, 용적 등 화물정보와 컨테이너 정보 등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기재 사항을 토대로 NACCS를 통해 일본 세관에 보고됨

수입신고 전에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 담당 창구에서 필요한 수입신고 서류 등을 상담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① 검사증명서_식물검역증명서

- 일본의 식물방역법 제6조에서는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은 수출국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검사 결과 검역유해동물이 붙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신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검사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일본으로 수입되는 신선식품은 해외로부터 병충해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을 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함

②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 확인

- 일본의 식물방역법 제7조에서는 수입금지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검역유해동물(곤충, 진드기,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등, 유용한 식물을 해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1 및 2에 규정된 것)
 - 검역유해식물(진균, 점균, 세균, 기생식물, 바이러스 등, 유용한 식물을 해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의 1 및 2에 규정된 것)
 - 흙 또는 흙이 묻은 식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2의 2에 열거한 식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열거한 식물(동표에서 재배된 것을 제외)
- 수입금지품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할 수 없음.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는 홈페이지¹⁾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https://www.maff.go.jp/pps/j/law/houki/shorei/shorei_12_html_12.html

식품위생법

① 식품첨가물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식품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첨가제(지정 첨가제), 기존 첨가제, 천연 향료 및 일반 식품 및 음료 첨가제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은 후생노동성 사이트 → 정책정보 → 부문별 정책목록 → 건강 및 의료 → 식료품 → 식품첨가물 → 첨가제 목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²⁾

② 잔류농약

- 일본으로 수출된 농산물에는 일본의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게시된 리스트에 없거나 잔류농약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농약 등의 허용량은 0.01ppm 이하임. 그리고 식품첨가물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질의 함유에도 주의가 필요함
-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은 일본 노동성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사이트 → 잔류농약에서 확인할 수 있음³⁾

신고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수입자는 화물 도착 후 즉시 「식품 등 수입 신고서」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 통관 장소의 관할 검역소에 제출함

- 식품 등 수입신청서 2부
- 신선식품(육류, 채소, 어패류 및 기타 간이가공)인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 서류가 필요함.
 - 수출자, 포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명 및 품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
 -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재명세서와 첨가물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품명, 생산국에 따라 수출 측 정부 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②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을 수입하는 항구(공항)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방역검역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식물, 수입금지 등 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함

2)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syokuten/index.html

3) <https://www.ffcr.or.jp/zanryu/index.html>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 의무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르면 판매용으로 제공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후생노동대신에 신고하여야 함.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② 수입신고 대상

-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모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유아용 장난감은 수입신고 대상임
- 식품위생법 제5조에 규정된 “판매”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 외의 제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 또한 규제대상이 되며 신고가 필요함

③ 신고 시기 및 제출 서류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④ 수입신고 방법

- 통관 대행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대행 요청
- 검역소 접수처에 지참
- 우편으로 제출(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할 것)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 FAINS)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① 개요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물자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② 심사

신고를 접수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수입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물질 함유 여부, 식품위생법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함

③ 검사

검역소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을 지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함. 수입 화물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되고 세관의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됨. 심사 및 검사 결과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식품 등은 일본 내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폐기 또는 반품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됨

④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은 식품위생법 제23조에 근거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및 장난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의 일본 국내 유통까지의 각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및 검역소가 실시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매년 정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계획은 매년 책정되므로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 후생노동성 사이트 → 보도·홍보 → 보도 발표 자료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① 적합 판정

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 수입신고서(신고필증)를 교부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음

② 부적합 판정

검역소로부터 불합격 받은 경우 검역소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식품으로는 통관할 수 없음. 용도를 바꾸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거나,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반송신고를 하여 수출통관하고, 폐기할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 처분하게 됨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운임 명세서, 보험명세서
- 기타 법령 허가서 등(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위생증명서 등)

세관
심사 및 검사

-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세관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 방법에는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의 3가지가 있음
 - 간이심사는 리스크가 낮은 화물에 관한 건으로 NACCS에 제출된 내용만을 검토함
 - 서류심사는 간이 심사보다 리스크가 있는 건으로, 수입신고서와 증명서류가 요구됨
 - 화물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현장 검사를 진행함. 이 경우 통관 소요 시간이 길어지며 검사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물품검사는 화물과 신고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장소나 세관 검사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짐

관세 납부
및
수입 허가

세관 심사 결과에 별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수입자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게 됨

4) (<https://www.mhlw.go.jp/stf/houdou/index.html>)

02 인증

일본 유기 인증기준 (Organic JAS) (필수)

1. 개요

일본 유기인증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는 2000년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채택한 유기농 식품의 생산, 처리, 라벨링 및 마케팅 지침을 기초로 제정됨. 일본 농림수산성(MAF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은 JAS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축산물, 유기사료, 유기가공식품, 소분업자, 수입업자에 대해 인증하고 있음

유기인증 JAS 마크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JAS 인증을 받지 않고는 유기농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음

신선 목이버섯 제품이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더라도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재배한 유기농 농축산물을 일본에서 표시하여 판매하려면 해당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임

2. 대상 품목

JAS는 주류·의약품·화장품 및 재생의료기기를 제외한 식품·음료·유지 및 그 밖의 농림, 축산, 수산물 및 이들을 원료로한 제품에 적용됨

JAS 유기 인증의 경우 유기농 법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 또는 유기 JAS 표준을 준수한 식품에 대해 부여함.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기타 식품 외 용도로 사용되는(첨가물, 임산물, 화장품) 가공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님

- 유기 농산물
- 유기 축산물
- 유기 가공식품
- 유기 사료
- 유기 조류

3. 인증 절차

1.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 및 하기 서류를 제출함
- ↓
2. 등록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수리 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
- ↓
3. 등록인증기관은 신청 업체와 일정 조율 후 제조시설, 생산 관련 기록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고 담당·관리자에게 질의 과정을 거쳐 현장 실사를 진행함. 현장 실사 과정에서도 부적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중단하고 보완된 후 재실사를 진행함
- ↓
4. 등록인증기관은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인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5. 등록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유기 인증을 발급함
- ↓
6. 등록인증기관은 인증 발급 후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함.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등록인증기관에 알려야 하며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함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인증신청서(등록 인증기관별 서류 양식에 차이 있으며 등록인증기관은 하기 목차5 참조)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 인증 대상 품목 종류
-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증 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보충 서류

- 시설도면
- 생산 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및 등급 규정
- 사용 예정 첨가물이 JAS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공정도
- 기록 서식

5. 등록인증기관 및 인증 수수료

(등록인증기관) 일본 농림수산물성 등록인증기관에서는 자체 비용을 산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음. 등록인증기관은 크게 지방 자치제에서 관할하는 기관과 민간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등록인증기관 목록과 기관별 비용은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⁵⁾에서 조회 가능함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는 취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실사 시 소요되는 등록인증기관 심사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은 실비로 추가 청구될 수 있음. 그리고 업체별 관리자 및 생산자 등의 인원에 따라 수수료 비용에 차이가 있음

〈지방 자치제 관할 A 등록인증기관 예시〉

| 구분 | 항목 | 비용 | 비고 |
|-----|----------|--------------------------------------|---|
| 취득비 | 인정 신청 비용 | 1건당 50.000엔 | |
| | 서류 심사 비용 | 1건당 20.000엔 | |
| | 현장 검사 비용 | 기본 검사료 3만 8,000엔 + 실비(당사 출장비 규정에 준함) | 2개월 이상 현장 검사 시 2일차 이후부터 일당 2만 4,000엔, 검사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2만 4,000엔 |
| | 판정 업무 비용 | 1건당 30.000엔 | |

6. 인증기준

JAS 표준은 일본의 유기 제품 수입 시 제품 표준으로도 활용되며 JAS 유기인증은 제품 품질 이외에도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평가함

유기 농산물은 다음과 같은 생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파종 전에 최소 2년 이상 퇴비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작기 중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생산지와 주변 지역의 유기체 또는 잔류물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 생산성을 유지할 것
- 비료 및 토양 관리제는 일부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 JAS 유기 인증에 적용되는 기준 규정들은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⁶⁾ → 유기 JAS 표준 기타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6)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kikaku

7. 동등성 인정

JAS 인증제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기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음 국가의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제품은 유기 JAS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해당 마크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할 수 있음

-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대만의 유기인증은 일본에서 JAS 유기인증 효력과 동등하게 상호 인정함

그러나 국내 유기제품의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유기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어, JAS 인증 취득이 요구됨.

8. 인증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산업부 식품제조과 기준인증실에서 JAS 인증 관련 사항들을 관리하며 JAS 법령에 따라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개별 인증 신청에 대해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함

식품 제조과 기준인증실 전화번호: 03(6744)2098/03(6744)7182

식품 제조과 기준인증실 메일주소: jas_soudan@maff.go.jp

농정국, 독립행정법인 농림 수산 소비 안전 기술센터(FAMIC) 등 각 지역별 문의처는 홈페이지⁷⁾에서 확인 가능함

7)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toiawase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선택)

1. 개요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함

2. 대상 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HACCP은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으로 수산물, 축산물, 식품업체 가공업이 대상이며, GAP은 식용 가능한 농산물이 대상임. 적용 대상이 식용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 GAP과는 차이가 있음

3. 인증 절차

1.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와 기본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계획서를 구비하여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함



2. 인증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일정을 통보함



3. 인증심사원은 접수 후 42일 이내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이력 추적 관리 여부 등의 사항들을 서류 및 현지방문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함



4. 인증 기관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 농가에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시 및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부적합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보함



5. 인증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 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함

〈신청 시기〉

신청 대상 농산물이 인증 기준에 따라 생육 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 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인 시기에 신청

4. 제출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유의 및 준수사항
 - 팀 구성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생산계획 및 이용할 수확 후 관리시설을 기재함
 - 품목별 재배작기는 생육중인 농산물과 생육계획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기재함
 -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함
 -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함
 -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함
 -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5. 취득 비용

GA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 + 심사원 출장비 +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비를 인증신청서 접수 시 납부

| 항목 | 수수료(원) |
|---------------------|--|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5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3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 2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심사원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 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함
- 일비·식비·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징수함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현금 또는 지로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심사원 출장비는 신청자에게 반환함
 - 출장 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되, 건당 농가 수가 많아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출장 인원은 2인 이하로 함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함

(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

6. 인증 기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 인증 기관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함

7.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

① 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인증농산물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 정지를 할 수 있음

| 위반행위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 | - | - |
|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인증취소 |
| 전업, 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취소 | - | - |

행정처분

①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1조제1항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음

②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필수)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생관리체계임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⁸⁾에서 진행하며, 아래 절차 등은 동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함

HACCP은 크게 식품, 축산물, 사료공장 분야로 나뉘며, 식품에 식품 제조·가공업이 포함됨. EU는 공통 식품 위생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5조⁹⁾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HACCP의 원칙에 따라 제품 및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

9) (EC) No. 852/2004 제 5조 HACC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4R0852-20210324>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¹⁰⁾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 ↓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 ↓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 ↓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 ↓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필증

10)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03 라벨링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 | | |
|--------------|---|---|
| 적용 규제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건강증진법(健康増進法)」, 2020 | |
| 세부 규정 | 식품 라벨링법(食品表示法) No. 70 of June 28. 2013 | |
| 세부 내용 | 라벨 표기사항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 정보 - 원료 정보 - 식품첨가물 - 순중량 - 유통기한 - 보관방법 - GMO(遺伝子組換え) 성분에 대한 표시 -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 |
| |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로 표기할 것 -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할 것 - 식품 첨가물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성분의 경우 용도와 같이 기입할 것 - 일반명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사용할 것 -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 열량(kcal), 단백질(gram), 지방(gram), 탄수화물(gram), 나트륨(gram별 염류 포함량)에 대하여 작성할 것 - 산화 지방, 콜레스테롤, 당,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성분의 경우 작성자 임의로 추가 가능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것 -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 복합재료의 경우 괄호 표기 후, 원재료를 표기할 것 - 보관에 적절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것 - 상온 보전 이외 유의 사항이 없을 시, 미표기 가능 |

| | | | |
|------------------------------|---------------------|-----------------|---|
| 정보 표시면 필수 표시사항 및 기준 |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 수입자 및 제조자 정보 | -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할 것 |
| | | GMO 성분 표기 | - 등록된 GMO 식품들인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기할 것 - 기존에는 GMO 성분이 0~5%로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GMO 무첨가'라는 표기를 쓸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는 0%가 아닌 이상 해당 표기를 쓰지 못하며, 대신 5% 이하의 성분의 경우 'GMO 성분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 구분 보존', 'GMO 성분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됨' 등의 표현을 삽입하여야 함 |
| | | 알레르기 정보 | - 새우, 게, 밀,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의무) - 일본 소비자청은 다음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표기하도록 권고: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 복숭아, Yam (yam), 사과, 젤라틴 - 해당 항목 포함 시 식품명 다음 괄호에 '알레르겐'을 표기할 것 |
| | | 순중량 | - 단위는 g(또는 kg), l(또는 ml)로 기재할 것 |
| | | 기타 | -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JAS 유기농 마크 및 유기농 표기 가능. 이때 꼭 이하의 JAS의 유기농 로고를 표기해야 함  |
| | | L-페닐알라닌 화합물 | -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 보건용 식품, 영양 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 사용 가능함 |
| | | | -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에는 'L-페닐알라닌화합물을 포함' 등으로 포함 사실을 표시할 것 |

자료: 일본 소비자청, 미국 농무부(USDA), 농식품수출정보(KATI)

04 위생요건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일본의 식품 첨가물 규제는 후생노동성(MHLW)이 담당함. 식품위생법(1947년 12월 법률 제233호)에 근거하여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의 목록과 그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품 첨가물의 규정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후생노동성은 우선 식품 첨가물의 과학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 첨가물전문조사회(添加物専門調査会)에 조사를 요청함.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후생노동성의 약사 및 식품위생심의회가 필요성과 유용성의 검토 및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

일본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은 후생노동성 사이트 내 > '정책에 대해' > '분야별 정책목록' > '건강·의료' > '식품' > '식품 첨가물' 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

혹은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에 접속하여 통관 > 식품 첨가물/유해물질DB > 일본 > 식품 유형 > 농산가공식품류 > 기타 농산가공품을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KATI에서 기타 농산가공품의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288건의 규정 기준이 검색됨

유해물질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MHLW)이 식품의 성분규격을 정하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식품위생법(1947년 12월 법률 제233호)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관련고시 및 성령(省令)에서 식품의 성분규격과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음. 그리고 적은 수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로 잠정적 규제치 및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표 25 농산가공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 순번 | 유해 물질명 | 식품 유형 | 잔류허용 기준 |
|----|--------------------|---------|------------|
| 1 | Fonicamid | 토마토페이스트 | 7ppm 이하 |
| 2 | cyanide | 생양금 | 불검출 |
| 3 | Symphytum(comfrey) | 모든 식품 | 불검출 |
| 4 | Aflatoxin B1 | 모든 식품 | 10ppb 이하 |
| 5 | Myclobutanil | 건포도 | 6 ppm 이하 |
| 6 | Diazinon | 건조 자두 | 2ppm 이하 |
| 7 | Azoxystrobin | 건조 허브 | 300ppm 이하 |
| 8 | sethoxydim | 건조 콩 | 25ppm 이하 |
| 9 | Fonicamid | 건조 콩 | 1ppm 이하 |
| 10 | Diazinon | 건조 콩 | 0.1ppm 이하 |
| 11 | sethoxydim | 건조 대두 | 15ppm 이하 |
| 12 | Fonicamid | 건조 대두 | 0.7ppm 이하 |
| 13 | Diazinon | 건조 대두 | 0.05ppm 이하 |
| 14 | Buprofezin | 건조 대두 | 0.02ppm 이하 |
| 15 | Bifenthrin | 건조 고추 | 5ppm 이하 |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일본 목이버섯 시장의 특징

(시장 규모와 수급) 일반적인 상온 채소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정체되었는데 목이버섯 시장도 비슷한 추세임

- 일본의 목이버섯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규모가 적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 저위

(소비) 목이버섯은 주로 중화요리, 라멘의 토핑 등으로 이용되는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소비되었음. 2011년 토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우려가 근년 버섯 소비 정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수입) 목이버섯 수입 규모는 2017~2021년 간 연 1.7%로 감소함.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일본의 한국산 목이버섯 수입은 2017년, 2021년에 소량 기록됨

수출 확대 방안

(상품) 목이버섯은 건강에 유익한데 기능성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안전성 측면을 강화한다면 일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음.

- 비타민 D와 식이섬유 다량 함유에 따른 건강 효능을 활용해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인정을 획득하도록 추진
- 중국산과 안전성 측면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GAP, 무농약 인증 등으로 차별화하고 가능하면 일본측 또는 동등 인증 획득 권장(가격경쟁력은 중국산 대비 열위이기 때문에 품질/안전성 경쟁력으로 차별화)
- 용량은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가정용을 목표로 한다면 일본의 유통 관행에 맞춰 저용량 제품 강구

(유통) 기존 수출-유통 경로 외에 코로나19 확산이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건강식품 전문점(드럭스토어 등), 개호식품(고령친화식품) 쇼핑몰 등의 새로운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건조버섯이 아닌 생버섯 형태로 수출하려면 유통기한을 고려해야 함. 일본 소비자는 유통기한에 민감하므로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며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포장-물류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World Trademap
3. 농식품수출정보(KATI)
4. USDA
5. 일본경제신문
6. 일본 농림수산업성 임야청(農林水産省 林野庁)
7. 일본 경제산업성
8. 라쿠텐
9. 아마존 재팬
10. 오렌지페이지넷(www.orangepage.net)
11. Gyokai-search
12. 후지 경제

□ 참고 자료

1. 버섯 수출연구사업단, "제4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버섯 수출연구사업단 버섯 수출 시장 마케팅 전략", 2021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일자 2022. 12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